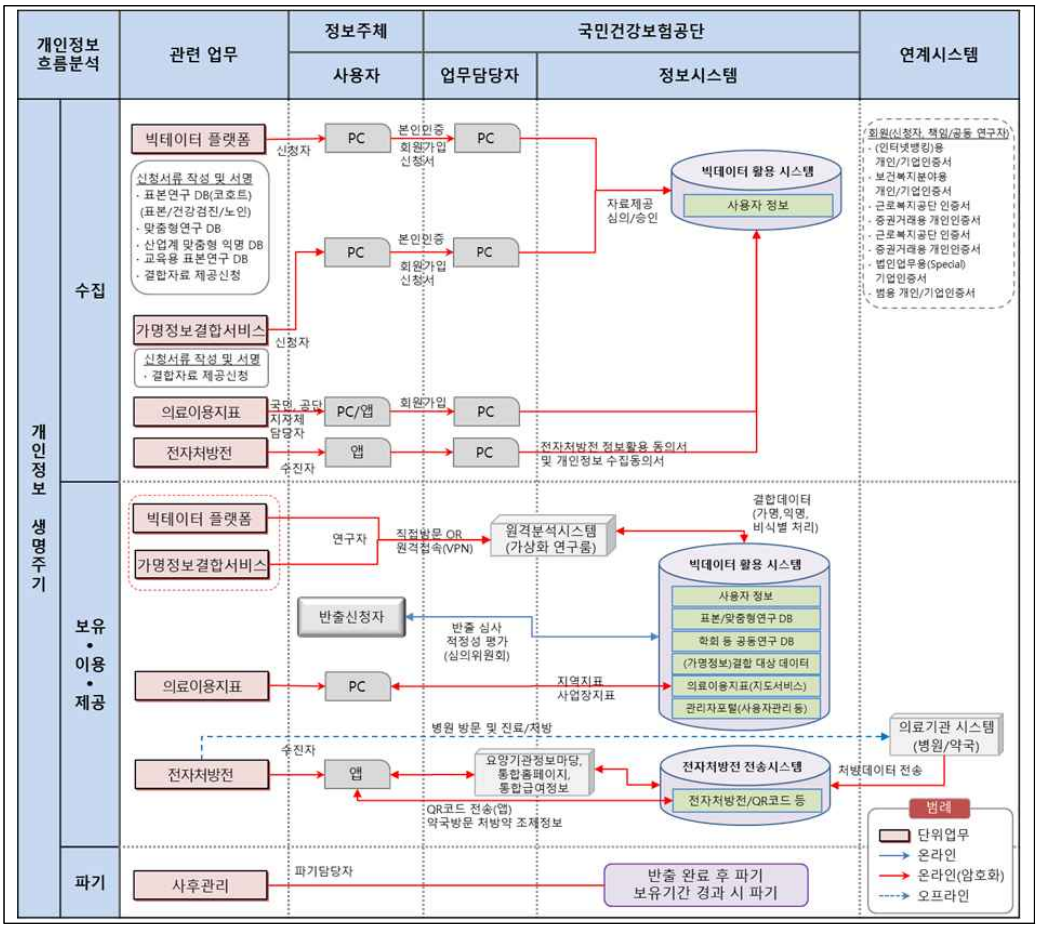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국민건강보험공단</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한국전산감리원</td><td>평가
기간</td><td>2025.10.27.
~
2025.12.31</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5.07.25. ~
2026.01.2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증가에 따른 분석환경 고도화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역량진단 컨설팅 결과에서 역량 약점으로 진단된 데이터 분석도구(플랫폼) 및 분석 역량 강화
• 내부업무시스템 및 사용자포털 기능개선
• 공익적 전자처방전 실증을 위한 서비스 개발(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서비스)</td></tr>
<tr><td rowspan="3">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시범사업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서비스)</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2,955,279천원</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AI서비스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의료법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해당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1. (분석 데이터 구축) 안전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DB 증설
2. (분석 환경 고도화)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확대 구축
3. (분석 전문가 양성)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기능·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운영 인프라 개선
- 의료이용지표 서비스 기능개선
- 가명정보결합 서비스 기능개선
5. (전자처방전 신규 구축) 공익적 전자처방전 실증을 위한 서비스 개발
-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웹.앱) 서비스 개발
-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 및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 개발
- 전자처방전 이용현황 등 관리를 위한 관리자 서비스 개발
- 공인전자문서센터 실증특례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해당없음</td></tr>
<tr><td rowspan="2">개인정보파일개</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공적 전자 처방전 전송 시스템</td><td>시범사업</td><td colspan="2">[필수]수진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보험자구분, 공상구분, 의료급여종별구분</td><td>해당없음</td><td>비대면 진료확대에 따른 실시간 처방조제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제공</td></tr>
</table>

요			, 본인부담구분, 보훈번호), 전자처방전정보, 처방기관 및 의료인정보, 조제약국 및 약사정보, 조제약품정보, 참여처방기관업무 담당자정보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등록번호, 대리자관계, 대리사유코드, 핸드폰) [선택] -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주요 업무흐름 - 수진자(환자)는 병원 방문/접수/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하고, 병원은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포함한 동의서를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진자의 카카오톡 및 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과 통합홈페이지에 전송 - 진료 및 의사 처방 후 병원은 전자처방전 메타정보(PDF파일 및 2D바코드 포함)를 공단에 전송 - 수진자는 핸드폰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개인정보 동의, 처방전 열람 및 QR코드를 생성표기 후 약국방문하여 전자처방전 접수 - 약국은 수진자의 QR코드를 스캔 또는 수동접수하고, 약사공인인증 및 수신 표시된 전자처방전에 따라 (대체)조제 후 조제결과정보를 공단에 전송 - 공단 관리자는 전자처방전 발급내역 조회 및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의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			

<table>
<tr><td></td><td colspan="2">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평가항목 제외
<table>
<tr><th>코드</th><th>내용</th><th>사유</th></tr>
<tr><td>1.1.1~
1.4.3</td><td>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td><td>2025년 3월 ‘건강iN의 건강정보 이용활성화 개선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1장을 평가하였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제외함</td></tr>
<tr><td>5.1.1~
5.4.2,

5.6.1~
5.8.8</td><td>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자동화된 결정, 인공지능(AI),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추가 보호조치)</td><td>- 대상시스템과 연관이 없어 평가 제외함

- 가명정보(9개 항목)은 평가 대상임</td></tr>
</table></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개인정보보호 법령』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조</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영향평가 시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평가된 사항> : 고려할 위험요소 사항
1. (3.5.1, 파기계획 수립) 보유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으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기능 구현(파기 및 파기기록 관리)할 계획임.</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2025년 3월 '건강iN의 건강정보 이용 활성화 개선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1장을 평가하였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제외함.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야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 되었으며 개인정보파일 관리 평가분야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였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인 보유, 이용・제공, 위탁 분야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 되었으며, 수집 분야의 수집이용동의서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였으며, 파기 분야에서 일부 부분이행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할 계획임.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인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분야 등 전반적으로 양호힌 상태로 평가되었음.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가명정보) 점검 결과,
공단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전반적으로 양호힌 상태로 평가되었음.</td></tr>
</table>